

수원지방법원 2016. 8. 25 선고 2015나38849 판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청구의 소]

전 문

원고, 항소인 A중회

피고, 피항소인 1. B

2. C

변론 종결 2016. 7. 21.

판결 선고 2016. 8. 25.

제 1 심 판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 10. 30. 선고 2015가단201229 판결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주위적으로, 원고에게 피고 B은 별지 제1목록 부동산(이하 '이 사건 1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 C은 별지 제2목록 부동산(이하 '이 사건 2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각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자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라.

예비적으로, 원고에게 피고 B은 이 사건 1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C은 이 사건 2부동산에 관하여 각 2008. 3. 31.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판단을 해당 부분에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사항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매년 11월경 이 사건 2부동산에 대한 임대료를 받아왔고, 2012년경까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를 납부하였다. 따라서 위와 같은 사실로써 원고가 H과 이 사건 1부동산에 관하여 교환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2부동산을 매수하여 H에게 명의신탁하였다는 점뿐만 아니라, 원고가 이 사건 1, 2부동산을 배타적으로 점유했다는 점을 추단할 수 있다.

나. 판 단

- 1) 갑 제15호증의1, 2, 제17, 19호증은 O이 원고의 총무로서 원고가 매년 250,000원 내지 450,000원의 돈을 종토 임대료로 받아왔다는 내용을 기재한 것이나, 한편 제1심 증인 O의 증언은 본인이 아닌 형이 임대료의 수입을 기재하였고 자신은 전해 들었다는 취지인 점에 비추어보면, 위 각 증거에 기재된 종토 임대료가 이 사건 2부동산에 대한 임대료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 2) 갑 제15, 17, 19, 21호증은 2002.경부터 2011.경까지 이 사건 1, 2부동산에 대한 재산세를 납부하기 위하여 돈을 지출하였다는 내용인데, Q이 피고 B에게 2011. 4. 6. 49,930원을, 2011. 4.

7. 17,650원을 각 송금한 사실은 인정되나, 그 외에는 원고가 재산세로 지출했다고 주장하는 각 내역과 실제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부과된 재산세(을제7, 8호증 참조)의 액수가 서로 다른 점, 원고의 2011년도 결산보고서(갑 제19호증의 2)에는 Q이 실제로 송금한 날과는 달리 2010. 9. 14.

49,930원 및 17,650원을 지출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보면, 위 각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를 납부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원고가 당심에서 제출한 갑 제16, 18, 20, 22 내지 2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의 위 주장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이종광, 판사 이미경, 판사 김근홍

별지

1. 당진시 R 임야 2,678㎡
2. 충남 예산군 S 전 1,415㎡. 끝.

